

공정위, 예금거래관련 3개 표준약관 심사·승인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일(화) 전국은행연합회가 심사 청구한 은행의 수신(예금)업무에 사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¹⁾ 및 「적립식 예금약관」²⁾ 등 3종의 예금거래 세부약관을 표준약관³⁾으로 심사·승인하였다.

공정위는 지난 '96년 10월과 '97년 8월에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과 예금거래기본약관을 각각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일련의 예금거래 세부 표준약관을 승인함으로써 은행의 여·수신업무 관련 표준약관의 정비업무를 마무리지었다.

이에 따라 복잡다기능화 되어있던 예금관련 표준약관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통합·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가 약관내용을 쉽게 알 수 있고, 금융기관도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일원화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수표나 어음 등의 지급에 있어 은행의 선관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모조용지의 사용에 따른 은행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좌거래시 거래장 또는 명세표 교부 후 이의신청기간을 2주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삭제하여 잘못된 거래는 추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당좌거래계약의 해지사유를 관련법규나 규정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경우에만 허용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좌예금계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미회수된 어음이나 수표 등이 있을 경우 예치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나, 고객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반환해주도록 하여 중소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의 경우에는 주로 조문정리 및 자구수정을 하여 약관의 가독성과 접근성이성을 제고하였다. 다만 거치식예금에서 무기명식예금증서의 은행면책범위에 있어 중대한 과실 외에 경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3개 표준약관이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27개 회원은행이 동 표준약관을 곧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3개 은행 예금거래관련 표준약관을 은행 이외에 수신거래관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제2금융권에서도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이미 승인된 표준약관도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취합하여 계속 수정·보완해나감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1)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이자와 함께 찾는 예금

2)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

3) 표준약관 심사·승인제도(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

- 표준약관이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전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함

◆ 주요 개선내용 ◆

<변경되는 은행수신거래 약관체계>

현 행	변 경
· 수신거래기본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 보통예금약관	· 기업저축예금약관
· 저축예금약관	· 당좌계정약관
· 자유저축예금약관	· 가계당좌예금약관
· 정기적금약관	· 장기주택마련저축예금약관
· 상호부금약관	· 목돈마련저축예금약관
· 근로자장기저축예금약관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예금약관
· 정기예금약관	· 복리자유적립식정기예금약관
· 양도성예금증서약관	· 자유만기정기예금약관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1. 어음 · 수표 등 지급위탁 사무처리와 관련한 선관의무 명기 및 은행의 면책주장 불인정

- 신고된 거래인감 및 “지시금지” 문자의 유무 확인에 있어 은행이 사무처리시 요구되는 선관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만 면책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기(3호 : 횡선수표, 4호 : 지시금지 수표 · 어음)
- 현재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는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어음 · 수표용지만을 사용하기로 약정된 바(약관 제6조제1항), 모조용지의 어음 · 수표인 것을 모르고 은행이 지급한 경우 이를 은행의 면책사유로 정한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

현 행	개 정
<p>제10조(수표 · 어음금 지급과 면책 등)</p> <p>① 수표 · 어음금 지급이 다음에 해당할 때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1. ~ 4. (생략)</p> <p>5. 육안으로 주의깊게 살펴보아 모조수표 · 어음용지인지 모르고,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용지로 인정하고 지급하였을 때</p>	<p>제10조(수표 · 어음금 지급과 면책 등)</p> <p>① 수표 · 어음금 지급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 · 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p> <p>1. ~ 2. (생략)</p> <p>3. 어음거래기본약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p> <p>4.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이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p> <p>< 삭제 ></p>

.....
공정위업무활동
.....

2. 거래명세 이의신청기간제한 삭제

- 당좌거래와 관련한 거래장 또는 명세표 교부 후 2주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
제12조(잔액 · 거래명세 정리 교부) ② 거래장 또는 명세표에 대하여는 그 교부일로부터 2주일 안에 거래처의 서면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그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3. 당좌예금계약 해지요건 강화

-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당좌거래계약 해지사유를 구체적 · 객관적 기준에 의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제13조(당좌 · 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거래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수표 · 어음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당좌 · 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당좌예금거래 보증금 반환청구요건 강화

- 당좌예금예약이 해지된 시점에서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어음 · 수표용지가 미회수된 경우 고객이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지만, 고객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미회수된 때에도 반환토록 하는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제15조(당좌예금 거래보증금) ① ~ ④ (생 략) < 신설 >	제14조(당좌예금 거래보증금) ① ~ ④ (생 략)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거치식 예금약관>

1. 이자

-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기간별 이율로 계산하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 할 수 있음
-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경우 예금일 당일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변경시 변경된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

2. 장기예금으로 계약 변경시 이자 적용

-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변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된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

3.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면책

- 은행이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여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제외

4. 세금우대종합통장거래

- 요건 : 1년 이상, 원금 1,800만원 이내, 1인 1통장

<적립식 예금약관>

1. 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 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 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계약금에서 빼거나
 -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납기일을 늦출 수 있음

2. 이자

- 정상거래시 만기지급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 만기앞당김지급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앞당김이율을 적용
- 만기일 이후 지급청구일까지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함
-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변경할 때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이율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

3. 자유적립식 예금의 특례

- 계약기간 동안 임의의 저축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